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2000. 2. 23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2.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2. 29) 상정 보류

○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10.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원국장 이중육)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 별정직공무원 임용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확대(안 제3조)

▶ 소속기관의 장 →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

○ 별정직 전보임용 범위 구체화(안 제7조)

▶ 단위기관 내 전보 →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미적용(안 제8조)

3. 질의답변 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의 신설된 단서 규정은 정년을 없애는 것인가? ○ 본 개정안은 어떤 근거에 의거 개정하는가? ○ 제3조의 임용·권자에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을 추가했는데 현재 의회에는 별정직공무원이 없으므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6급 정년은 57세인데 비서는 58세도 채용될 수 있다는 것임 ○ 행정자치부 준칙임 ○ 준칙이 도 의회와 시 의회를 같이 통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된 것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 제8조제2항의 사무국장의 임용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제8조2항의 추가사항은 우리 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의회에서도 사무처장이 하고 있음 ○ 전보, 휴직, 복직 등의 권한이며 신규임용, 면직, 징계 등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제외됨 ○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음 |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조례개정안이 도에 맞추어 개정되는 것이므로 부천시 실정에는 맞지 않으며,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별정직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구조조정으로 별정직을 줄여 나가는 상황에서 별정직을 둘 수 있는 개연성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지만 의회사무국에 별정직 정원이 없는 상황에 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89호
의결년월일	2000. 10. 20 (제81회)

제출년월일 : 2000. 10. 19

제출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일부 위임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한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은,
- 현재 부천시의회사무국에는 별정직공무원이 없어 부천시 실정에 맞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사항이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별정직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의회사무국에 별정직을 둘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3조제2항은 현행대로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한의 수임자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려는 안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소속기관의 장”으로 조정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임용·권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임용·권자) ①(생략)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속기관의 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임용·권자)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임용·권자) ①(개정안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9호
의결년월일	2000. 10. 20 (제81회)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별정직공무원 임용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확대(안 제3조)
 - ▶ 소속기관의 장 →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
 - 별정직 전보임용 범위 구체화(안 제7조)
 - ▶ 단위기관 내 전보 →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미적용(안 제8조)

[수정안 포함]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 의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③(생략)	제2조(적용범위) ①..... <u>지방별정직공무원</u> ②~③(현행과 같음)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 자 <u>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임용</u> 할 수 있다. 이 경 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 반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보) <u>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u> <u>직위로 전보</u>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생략)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현행과 같음)